



#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Republic of Korea

Phone:+82-70-8799-8770  
Fax :+82-70-8799-8774  
E-mail : krgst@krs.co.kr  
Person in charge : KIM Donggi

**No : 2024-ETC-01**

**Date : 2024.02.01**

## 제목 : 해운분야 EU ETS 도입에 따른 초기 이행 지침

유럽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7월 'EU Fit for 55' 패키지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Fit for 55' 패키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이며, 이 중 국제해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에 유럽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 ETS, Emissions Trading Syste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선박의 기국과 관계없이 유럽 경제 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의 관할 구역 내 항구에 기항하는 총톤수 5,000척 이상의 선박은 연간 기준으로 EU MRV 항차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하고, 관리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EEA 영토 내 항구 입항 금지와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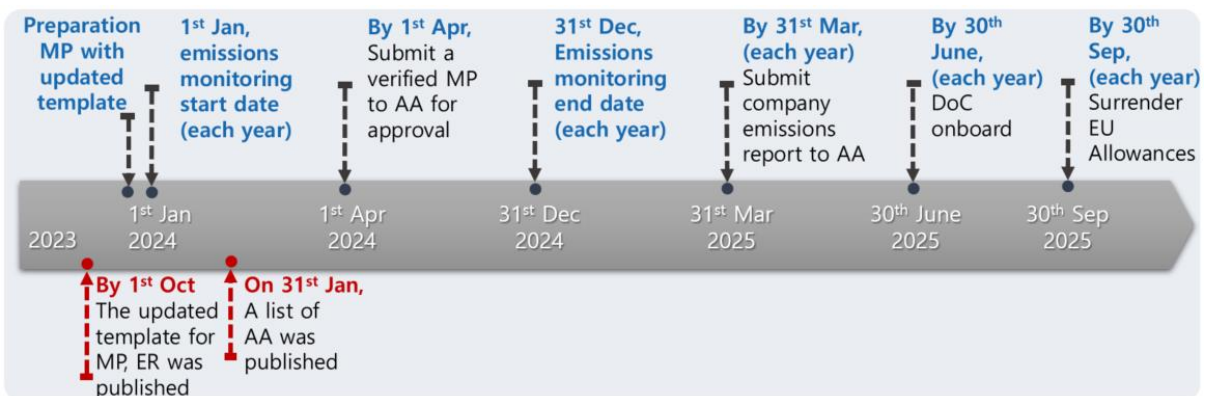
이에, 한국선급은 해운분야에 적용되는 EU ETS, 배출권 구매 방법, 배출권 제출을 위한 계좌 개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정보를 발행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24/411 1부.

## 1. 해운분야의 EU ETS 개요

- EU ETS 규제 이행을 위해 해운선사(Shipping company)는 아래의 타임라인에 따라 EU ETS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 2024년 1월 31일, 각 해운선사별 관리당국(Administering Authority)리스트<sup>1</sup>가 EU로부터 공개되었습니다.
- 2024년 4월 1일까지 모니터링계획서(Monitoring Plan, MP)를 개정하여, 검증기관에 재승인을 받은 후 관리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매년)까지, 수행하는 EU MRV 항차에 대해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 2025년도 3월 31일(매년)까지, 선사는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된 각 선박 및 회사 수준의 배출량 보고서를 관리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도 9월 30일(매년)까지 EU ETS 규정에 따라 계산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하여 관리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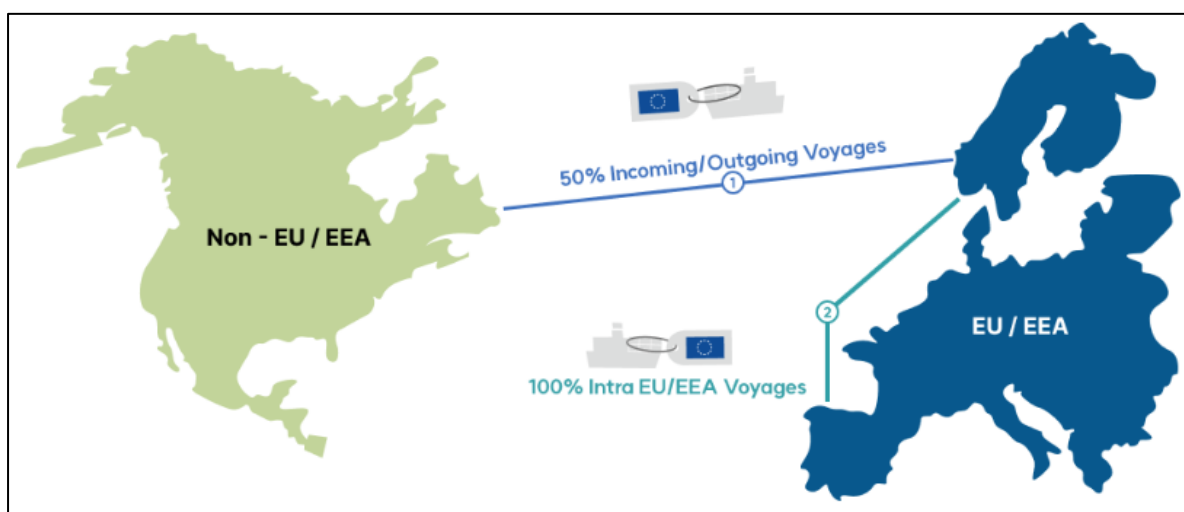
[그림] EU ETS 규제 이행을 위한 타임라인

<sup>1</sup> 관리당국 내용은 본문 1.4절 참조, 관리당국 리스트는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24/411를 통해 확인 가능

## 1.1 적용 사항

### 1) 적용 범위

- 2024년 1월 1일부터 EU 항만에 기항하는 5,000GT 이상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에 적용되며, 다음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적용합니다.
- EU/EEA 회원국 ↔ EU/EEA 비 회원국 기항지 사이의 항차 (Extra-EU voyage) : 배출량의 50%
- EU/EEA 회원국 ↔ EU/EEA 회원국 기항지 사이의 항차 (Intra-EU voyage) : 배출량의 100%
- EU/EEA 회원국 항구 내 배출량 (Within EU ports) : 배출량의 100%



[그림] EU MRV 항차에 따라 EU ETS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적용 비율

### 2) 적용 선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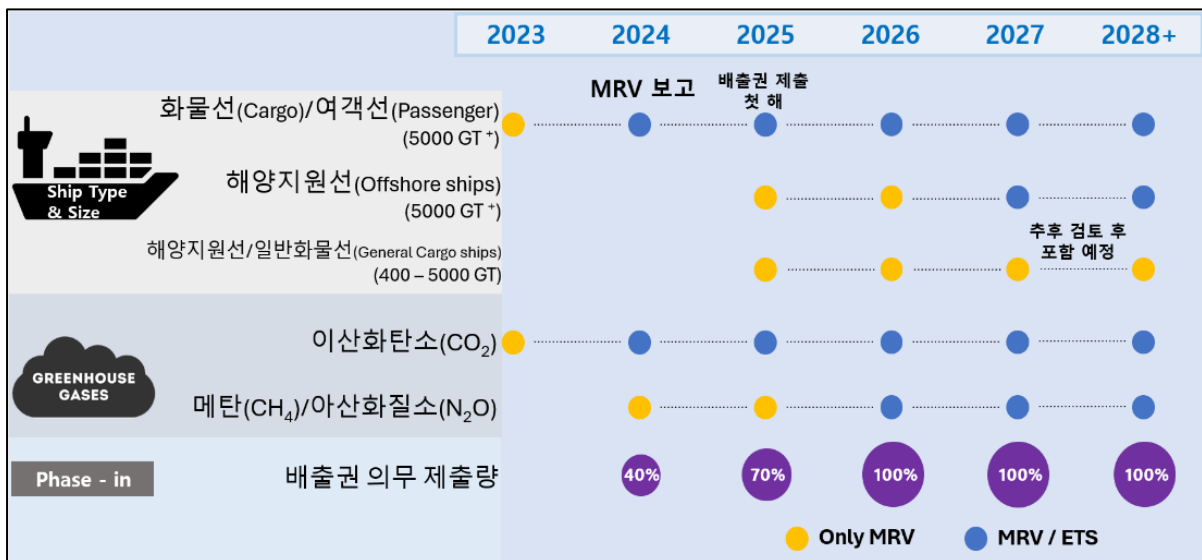
- 2027년 이후부터는 5,000GT 이상의 해양지원선(Offshore service vessel)에도 적용되며, 400 GT 이상의 해양지원선 및 일반화물선(General cargo ship)의 포함 여부는 2027년 이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3) 규제 대상 온실가스

- 규제 대상 온실가스의 경우,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CO<sub>2</sub>) 만을, 2026년부터는 이산화탄소(CO<sub>2</sub>)뿐만 아니라 메탄(CH<sub>4</sub>)과 아산화질소(N<sub>2</sub>O)도 ETS 규제 대상 온실가스에 포함됩니다.

#### 4) 단계적 적용 (Phase-in)

- 해운분야 EU ETS 편입 후 최초 2년간(2024, 2025년), 배출권 제출 범위를 결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4년 배출량의 40%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2024년 배출량 (2025년 배출권 제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
- 2025년 배출량 (2026년 배출권 제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
- 2026년 배출량 (2027년 배출권 제출)부터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CO<sub>2</sub>, CH<sub>4</sub>, N<sub>2</sub>O)의 100%



[그림] EU ETS Overview, Source: FAQ-Maritime transport in EU ETS, European Commission

#### 1.2 EU ETS 및 MRV 책임 주체

- EU ETS 및 EU MRV의 책임 주체는 해운선사(Shipping Company)로 정의됩니다. 해운선사는 '등록 소유자\* 또는 등록 소유자로부터 선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인수한 관리사(ISM Company)나 나용선자 등의 다른 조직 또는 개인으로서, 이러한 책임을 인수하면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C) 제336/2006호 부록 I에 명시된 선박의 안전 운영 및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관리 규정에 의해 부과된 모든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로 동의한 경우'로 정의됩니다.

\* 등록 소유자(Registered Owner) : 선박의 국적증서상에 기재된 등록 소유자를 의미하며, IMO 고유 회사 및 등록 소유자 식별 번호(IMO Unique Company and Registered Owner Identification Number)를 할당 받습니다.

- 이는, EU ETS 및 MRV의 규정 상에서 책임 주체는 등록 소유자 또는 해당 선박의 관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U ETS 및 MRV 규정에 따르면, ETS 및 MRV 규정 이행에 대한 책임 주체는 동일해야 하며, 등록 소유자와 관리사는 ETS 규정을 준수할 적절한 주체를 결정해야 합니다.
- 관리사가 등록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양 당사자 간의 서명이 포함된 공식 계약을 통해 EU ETS 및 MRV의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소유자와 관리사가 명시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 소유자가 ETS 규정 준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때, 선박 소유자는 일부 운영 작업(예: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을 선박 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은 등록 소유자를 EU ETS 및 MRV 의무 이행의 책임 주체로 간주합니다.
- 나용선자는 EU ETS와 MRV하에서 선박 소유자로 간주될 수 없으나, 나용선자가 ISM 코드 이행의 주체로 위임받은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ETS 및 MRV의 책임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용선자가 등록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등록 소유자를 대신하여 관리사와 EU ETS 및 MRV 이행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 1.3 해운선사의 배출권 비용 전가

- 연료 구매 및/또는 선박 운항\*의 책임이 계약에 따라 해운선사 외의 다른 기관에 부여된 경우, 해운선사는 해당 비용에 대한 환급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EU 회원국들은 해운선사가 이러한 상황에서 비용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회원국별로 마련해야 합니다.

\* 선박 운항 : 선박이 운송하는 화물, 항로 및 선속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1.4 관리당국(Administering Authority)

- 관리당국은 EU ETS 체제 하에서 EU ETS 이행과 관련된 관리 책임을 지는 정부기관을 의미합니다. 관리당국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EU MRV와 EU ETS 이행 주체인 해운선사 확인
  - EU MRV 모니터링계획서(Monitoring Plan, MP) 최종 승인
  - 검증이 완료된 회사 단위 배출량 보고서(CER, Company Emission Report) 수신
  - 해운선사의 EU ETS 이행 여부 확인
- EU ETS의 적용을 받는 각 해운선사는 관리당국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31일에 해운선사별 관리당국 리스트가 발표되었으며, 그리고 그 이후 매 2년마다, 유럽 위원회는 EU 회원국의 관리에 대한 각 회사의 관리 당국 목록을 재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운선사별 관리당국은 EU ETS 지침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THETIS-MRV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EU 회원국에 등록된 해운선사의 경우, 해당 선사가 등록된 EU 회원국입니다.
  - EU 회원국에 등록되지 않은 해운선사의 경우, 그 해운선사가 지난 4년간 수행한 EU MRV 항차에서 항구 기항 추정 횟수가 가장 많은 EU 회원국입니다.
  - EU 회원국에 등록되지 않았고, 지난 4년 동안의 모니터링 기간에 EU ETS 지침의 범위에 속하는 항해를 수행하지 않은 해운 회사의 경우, 해당 회사의 선박이 도착하였거나 EU ETS 지침의 범위에 속하는 첫 항해를 시작한 EU 회원국이 관리 당국으로 지정됩니다.
- 2024년 1월 31일에 공개된 해운선사별 관리당국 리스트에서 담당 선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럽해사안전청(EMSA)에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더불어, 선사가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EU MRV 항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선사는 ETS 규제에 적용 받게 됩니다.
- 등록 소유자가 ETS 규제 이행의 책임주체인 경우, 등록 소유자는 관리 당국에 선박명 및 IMO Number를 포함한 ETS 및 MRV 규제 대상 선박 리스트를 관리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 등록 소유자가 관리사에 ETS 및 MRV 관련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관리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국의 공용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일 경우 영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또한, 관리당국이 지정된 경우 관리사는 위임과 관련된 템플릿을 관리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며,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자료에 대한 문의도 필요합니다. 책임주체 권한 위임 사항이 담긴 문서는 해당 선박의 모니터링계획서 검증 시, 담당 검증기관에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 1.5 특정 규칙 및 면제 조항(Specific rules and derogations)

### 1) 2030년 12월 31일까지 EU ETS에 적용되는 특정 규칙 및 면제 조항

- (1) 대빙등급(Ice Class)이 IA, IA Super 혹은 이와 동등한 등급의 선박
  - 배출권 제출량 5% 감면
- (2) 여객선(Passenger ship)과 Ro-pax ship이 수행하는 아래 항차
  - 배출권 제출량 100% 감면
  - EU 회원국의 소규모 섬(인구 200,000명 미만이며 도로 시설 없음)과 같은 회원국 본토사이의 항해 및 항만 체류
  - 두 EU 회원국을 연결하는 국제 공공 서비스 계약 및 국제 공공 서비스 관련 항해 및 항만에서의 활동
- (3) EU 회원국의 최외곽 지역(outermost region)항구와 같은 회원국의 다른 항구간 항해 및 항만에서의 체류
  - 배출권 제출량 100% 감면



[그림] The EU and its outermost regions, Source: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policy/themes/outermost-regions\\_en](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policy/themes/outermost-regions_en)

## 2) RFNBO, RCF, 바이오매스

- 유럽 위원회는 바이오매스와 생물학적 기원이 아닌 재생 가능 연료(RFNBOs) 및 재활용 탄소 연료(RCFs)가 해운분야를 포함하여 타 분야에서도 일관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재생 가능 연료 및 재활용 탄소 연료의 정확한 처리는 EU ETS 지침의 제14조에 따라 개발될 시행 법률에 의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위 시행 법률은 2024년 내 채택될 예정입니다.
- 바이오매스의 경우, 유럽 연합 재생 에너지 지침에 의해 설정된 지속 가능성 기준과 온실가스 저감 기준을 만족한 바이오매스에 기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ETS 규정하에서 0으로 처리됩니다.

## 3) CCU/S(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or Storage) 기술 적용

- 아래의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 배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에 관한 지침(2009/31/EC)에 따라 포집 이송 및 저장이 되며 이는 영구적이며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는 경우
  - 활용된 CO<sub>2</sub>의 경우, 영구적 화학 결합이 되어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는 경우
- \* 활용 기술 : 포집된 CO<sub>2</sub>를 바로 사용하는 직접 활용기술과 여타 유용한 제품으로 바꾸는 전환 기술로 구분*

## 1.6 ETS 규제 이행 유의사항

### 1) 기항의 예외 (인접 컨테이너 환적 항구, Container transshipment port)

- 컨테이너선의 비EU국가 항구로의 우회 정박을 줄이고 컨테이너 환적 활동을 EU 외부의 항구로 이전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03/87/EC 지침에 따라, '인접 컨테이너 환적 항구에서의 컨테이너선의 정박'은 '기항지'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2003/87/EC 지침내에 명시된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때 '인접 컨테이너 환적 항구'로 식별됩니다.
- '인접 컨테이너 환적 항구'는 컨테이너 환적 비중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12개월 동안 해당 항구의 전체 컨테이너 환적량의 65%를 초과
- EU 회원국의 관할 하에 있는 항구에서 300해리 이내에 위치
- 해당 항구의 국가는 해당 항구에 대해 ETS와 동등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음



- 유럽 위원회는 2023년 10월 26일 Tanger Med(모로코)와 East Port Said(이집트)를 '인접 컨테이너 환적 항구'로 규정하는 시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EU) 2023/2297)을 채택했으며, 본 시행 규칙은 2년마다 개정될 예정입니다.
- 컨테이너선의 경우, EU MRV 항차 수행 중 아래 두 항구에 정박하여 화물작업을 수행하더라도 해당 항만에 기항한 것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해당 항만에 입항하였다도 EU MRV 항차의 종료가 아닌, 항차의 지속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 Containership transshipment ports, Source: Google Maps

## 2) 블렌딩유 배출계수 보고 유의 사항

- 2023년도에 사용한 블렌딩유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기존 모니터링 계획서 Table B.4에 명기한 배출계수 결정을 위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산출된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데이터 보고 기간	적용 배출계수
'23년 데이터 ( '24년 보고)	모니터링계획서에 명기한 배출계수 결정 방법론을 이용하여 산출된 배출계수 적용, 블렌딩유는 총 소모량을 'Other'로 보고, 산출된 배출계수 정보 입력
'24년 데이터 ( '25년 보고)	Regulation (EU) 2023/2776의 부속서 I에서 확인되는 배출계수 적용. 블렌딩유는 각 연료별 소모량 및 배출계수 별도 보고

[그림] 데이터 보고 기간에 따른 블렌딩유 적용 배출계수

## 1.7 불이익(Penalties)

- EU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배출량이 배출권 제출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배출량 톤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 납부 후에도, 다음 연도내로 미 제출된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속 2회 이상 배출권 제출 요건을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지 회원국의 관할 당국이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2. 유럽탄소배출권(EUA) 거래 방법

### 1) 유럽탄소배출권 (EUA, EU Allowances) 소개

- 유럽탄소배출권(EUA, 이하 배출권으로 표기)는 2003/87/EC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입니다. 배출권은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으며, 배출권의 시장 가격은 경매를 통한 공급 및 배출권 주체의 수요에 따라 항상 변화합니다. 해운선사는 배출권을 구매하기전 배출한 회사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당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 제출 필요량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출권은 1차 시장(경매) 와 2차 시장(현물/선물/옵션) 등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 2) 배출권 종류

- 배출권 종류로는 EUA 및 EUAA(European Union Aviation Allowance)가 있습니다. 해운선사는 2가지 배출권 중 어떤 배출권을 구매하더라도 배출권 제출에 사용 가능합니다.

### 3) 배출권 시장

- 배출권은 해운선사가 직접 구매하거나, 중개인 등을 통한 간접 거래도 가능합니다. 이는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1차 시장

- 배출권은 유럽에너지거래소\* (EEX, European Energy Exchange)가 지정된 날짜에 개최하는 경매를 통해 입찰할 수 있으며, 경매 최소 거래단위는 최소 500 EUA (500tCO<sub>2</sub>eq)입니다. 경매 입찰 참가 신청 가능자는 아래와 같으며, 경매 입찰 참여를 위해 유럽에너지거래소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배출권 책임 주체(MOHA(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계좌주)
- 배출권 책임 주체에게 위임받은 투자 회사 및 금융기관
- 배출권 책임 주체 공동체(Business grouping)
- 배출권과 관련된 EU 산하 공공 및 국영기관

*\*유럽에너지거래소: 현재, 25개의 EU 회원국과 3개의 EFTA 국가들을 대신하여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 플랫폼입니다.*

#### (2) 2차 시장

- 거래소와 장외(OTC)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으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거래 단위는 최소 1,000EUA(1,000tCO<sub>2</sub>eq)이며, 종류로는 현물/선물/옵션 등이 있습니다.

### 3. 배출권 계좌 개설

#### 3.1 계좌 개설 절차

- 배출권 계좌 개설은 아래의 5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은 EU 로그인 홈페이지<sup>2</sup>를 통해 가능하고, EU 로그인 앱("EU Login")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각 해운선사별 관리당국 리스트 공개 후, 관리당국으로 지정된 회원국에서 URID(Union Registry Identifier)생성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부여 받은 등록키(Enrolment Key)를 입력해야만 개설된 계좌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

<sup>2</sup> <https://webgate.ec.europa.eu/tracesnt/login>

단계	방법
1단계	EU 로그인에 계정 생성 후, EU 로그인 인증 서비스("EU 로그인" 앱)에 등록
2단계	연합 등록부에서 회원국별 URID 생성
3단계	계좌 개설 신청(신청서와 회원국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출)
4단계	회원국에서 부여받은 등록 키(Enrolment Key) 입력
5단계	개설 완료된 계좌 접근 가능

[표] 배출권 계좌 개설 절차

### 3.2 연합 등록부(Union Registry)

- 연합 등록부는 온라인 banking 시스템과 유사한 IT 시스템으로, 배출권의 회계 처리를 담당합니다. 이 시스템은, 배출권 시장에서 활동하는 계좌 운영자와 거래자들의 계정을 관리하며, 경매나 2차 시장을 통해 얻어진 배출권 잔여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 참가자들 간의 배출권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연간 검증된 CO<sub>2</sub> 배출량을 기록합니다.
  - 해운선사는 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연합 등록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리당국에 MOHA(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개설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계좌(Trading Account)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계좌 개설 신청을 위한 관리당국의 연락처는 연합등록부 홈페이지<sup>3</su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 등록부 상 기록되는 정보
계좌주의 배출 관리 대상 선박
배출권 관리 계좌
계좌주의 배출권 거래기록
연간 검증된 CO <sub>2</sub> 배출량
연간 검증된 CO <sub>2</sub> 배출량/배출권 제출량 비교 및 충족 여부

[표] 연합 등록부 상 기록되는 정보

<sup>3</sup> [https://climate.ec.europa.eu/eu-action/eu-emissions-trading-system-eu-ets/union-registry\\_en#links](https://climate.ec.europa.eu/eu-action/eu-emissions-trading-system-eu-ets/union-registry_en#links)

### 3.3 MOHA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

- MOHA는 해운선사만의 고유한 배출권 거치 계좌입니다. 연합 등록부를 통해 해운선사는 2025년(2024년 데이터)부터 매년 3월 31일까지의 연간 회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록이 가능하고, 9월 30일까지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 제출이 가능합니다. 각 해운선사는 오직 하나의 MOHA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관리당국이 정해진 해운선사의 경우에는 40 영업일 이내 또는 관리당국이 정해지지 않은 해운선사의 경우, 운영 선박의 EU 권역 내 첫 기항 후 65 영업일 이내에 해당 국가 관리자(관리당국)에게 MOHA 정보를 제공하고, EU 등록부에 MOHA 개설을 요청해야 합니다.
- 관리당국은 MOHA 개설에 필요한 해운선사 및 AR(Authorized representatives)등을 포함한 정보를 받은 후 20~40 영업일 이내에 EU 연합 등록부에 각 선사별로 MOHA를 개설하거나 계좌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거부 사실을 예비 계좌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MOHA 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 자료
IMO 고유 회사 및 등록 소유자(Registered owner) 식별 번호
등록 소유자 ↔ 관리사간의 MRV/ETS 의무 책임 위임을 입증하는 문서 (등록 소유자가 관리사로 책임을 이관했을 경우)
선주 책임하에 있는 선박 리스트 (해운선사가 등록 소유자일 경우)
그룹 조직 체계 확인 문서 (해운선사가 그룹사일 경우)
은행 계좌 상세, 법적 실소유주 정보 등

[표] MOHA 계좌 개설에 필요한 증빙 자료

### 3.4 AR (Authorized Representatives)

- AR은 연합 등록부 계정 내에서 해운선사를 대표하여 배출권 제출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배출권 제출 등의 권한을 가진 AR은 'Four Eyes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Four Eyes 원칙'은 배출권 거래에 최소 2인 이상의 AR이 필요하고, 이는

대표자 1인이 등록하여 거래를 수행하고, 또다른 AR이 이를 확인하여 최종 승인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 해운선사는 MOHA 계좌를 운영함에 있어서 서드 파티(Third party)를 AR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서드 파티의 AR은 여러 해운선사의 AR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해운선사가 AR을 지정하기 위해 관리 기관에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하는 정보는 EU의 위임규정 2019/1122(EU)의 부속서 8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3.5 계좌 운용 수수료

- EU 의 연합등록부에 등록된 계좌는 매년 관리당국에 계좌 운용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관리당국마다 각기 다른 계좌 요금 정책이 존재하므로, 각 관리당국별 계좌 운용 수수료 정책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EU ETS 규정 이행을 위한 해운선사 준비 필요 사항

### 1) EU 연합 등록부 계정 개설 및 관리당국 확인

- 등록 소유자, 관리사간 ETS 및 MRV 규제 이행 주체 확인
- EU 연합 등록부 규정 확인 및 계정 개설
- 관리당국 확인 후, MOHA 개설 요청

### 2) 모니터링계획서(MP) 업데이트\* 및 검증 요청, 승인본 관리당국에 제출

- 2024년 4월 1일까지 승인된 MP, THETIS-MRV상에서 관리당국에 제출

\* MRV 규정 개정에 따라 아래 내용 추가된 모니터링계획서 작성 필요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사용(CCUS) 에 관한 세부 사항
- 이산화탄소(CO<sub>2</sub>) 뿐만 아니라 메탄(CH<sub>4</sub>) 및 아산화질소(N<sub>2</sub>O)에 대한 배출계수 추가
- 바이오연료(Biofuel), 비생물학적 기원의 재생 가능 연료(RFNBOs), 재활용 탄소 연료(RCFs)에 대한 배출 계수 결정 절차
- LNG사용 배출원의 배출원 등급 및 슬립(Slippage) 계수
- 해운선사 세부 정보 (등록 소유자의 등록 국가, 대빙 등급 등)
- 위험도 평가 및 운항 데이터 운용 방법론

### 3)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 MP에 명기한 방법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 4) 배출량 보고서 준비 및 검증 요청, 승인된 보고서 관리당국에 제출

- 개별선박 배출량 보고서 및 회사 수준 배출량 보고서(CER) 준비 및 검증 요청
- 2025년 3월 31일까지 승인된 배출량 보고서 관리당국에 제출 필요

### 5) EU 배출권 구매 및 제출

- 2025년 9월 30일까지 관리당국에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 구매하여 배출권 제출
- 블렌딩연료, 대체연료, 면제 및 예외사항 규정 확인 필요

## 5. 한국선급 해운선사 기술지원 서비스

한국선급은 온실가스 온라인 관리 시스템인 KR GEARS를 통해 해운선사가 EU MRV 및 EU ETS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EU ETS Calculator, Voyage statement와 같은 업데이트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 KR GEARS는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2449에서 요구하는 서식을 반영하여, 각 선박별 EU MRV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KR GEARS에서 승인된 모니터링 계획서는 XML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하여 THETIS-MRV에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2) ETS Calculator

- KR GEARS에 입력되었거나 검증 완료된 EU MRV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출권 가격 정보(EUA Spot/Future Price)와 연계하여 연도별 배출권 예상 구매 비용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3) Voyage Statement

- 한국선급은 정기 검증 서비스와는 별개로, 선박의 일부 EU MRV 항차 또는 기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Voyage Statement를 수시로 발급하는 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운선사의 EU ETS 규정 자발적 이행에 대한 기술적 서비스로서, 선박 관리자, 등록 소유자, 용선주, 화주 등의 이해관계자들 간 배출권 거래 비용 정산을 위해 해당 Statement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저희 선급은 본 기술문서의 후속으로 EU-ETS 및 EU MRV 규정(신규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기술문서를 개발 및 배포 예정입니다.

배부처 : 검사원, 선주, 관련 업계 종사자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